|  |
| --- |
| **제안 자료** |

www.sdu.ac.kr

|  |  |  |
| --- | --- | --- |
| **○○기관** | - | EMB00002bbc2fe0 |

|  |  |
| --- | --- |
|  |  |
| 산학협력 제안서 | |
|  |  |

EMB00002bbc2fe5

|  |  |
| --- | --- |
| **대학 소개 및 산학협력 안내** |  |
| **1. 서울디지털대학교 소개**  **◦ 2001년** 개교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의 정규 4년제 학사학위  **◦ 13,000명**이 재학. **2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종합 사이버대학  **◦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 **스마트폰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여 기업인, 직장인, 공무원이 선호  **◦** 21개 사이버대학 중 **졸업생 1위**, **가장 적은 등록금,** 대학생 **국가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수 | 졸업생 수 | 교수진 | 대학원 진학 | 모바일 수업 | 학과 수 | 등록금 | | 1만 3천 명 | 2만 6천명 | 4백 명 | 3천 명 | 가능 | 24개 | 최저 수준 |     **2. 대표적 인증현황**   |  |  |  |  |  |  | | --- | --- | --- | --- | --- | --- | | EMB00002bbc2fed | |  | | --- | | **2015** [한국U러닝연합회]  우수 콘텐츠 기관상 28개 교과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 | **20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4개 교과 콘텐츠 품질인증 | | **2013**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이러닝콘텐츠 공모전 교육부 장관상 (2년 연속) | | **2012** [교육부, KERIS]  고등교육기관 이러닝콘텐츠 공모전 교육부 장관상  KERIS 원장상 | |   **3. 산학협력 내용**  ◦ **계약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부담은 전혀 없음** ◦ 협약 체결기관의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들께 평생교육차원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 24개 학과 설치. 국가자격증 및 총장명의 민간자격증 취득 기회  ◦ 산업체위탁전형 **신・편입학 또는 시간제등록 장학혜택**  - 임직원에게 입학금 면제와 매학기 산학협력 장학 혜택  ◦ 협약기관에서 추천하는 임직원을 **겸임교수**로 위촉 가능  ◦ 협약기관 담당자는 1,2학기 산업체위탁 신･편입학 모집안내 공문을 **공람 또는 게시**  - 담당자 변경 시 이메일로 변경사항 알림  **- 1학기 모집 : 12. 1.부터 / 2학기 모집 : 6. 1.부터**  **4. 산학협력 체결 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협회, 교육기관, 군부대 등 **1,200곳**과  산학・관학・학군협약을 체결  **5. 산학협력 장학금**   |  |  |  |  | | --- | --- | --- | --- | | 입학구분 | 입학금 | 수업료 | 비 고 | | **산업체**  **위탁전형**  신(편)입학 | **입학금**  **30만원**  **면제** | **학점당 6만원**   |  | | --- | | **감면율 ○○%적용 → ○만 ○천원**  **사이버대학**  **최저 등록금** | | ◇ 재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증명서 제출가능자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  ◇ 입학 후 매학기 2.0 이상  성적유지 필요 |  |  |  |  | | --- | --- | --- | | **구 분** | **서울디지털대** | **경희 /숭실 /한양사이버대 등** | | 학점 당 수업료 | 6만원 | 8만원 | | 18학점 기준 수업료 | **108만원** | **144만원** | | 수업료 감면 **(30% 예시)** | **75만 6천원** | **100만 8천원** |   **[국가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 시 등록금 부담 대폭 경감.  입학생은 소득만 심사하여 10분위 중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 지급(상위 20%만 제외)  **6. 산학협력 체결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협회, 교육기관 등에 산학협력 제안  기관에 제안서 및 홍보자료 송부 | | | | | | |  | |  |  |  |  | ▼ |  |  |  |  | |  | 기관에서 제안 내용 검토 및 회신 (협약서 조문 수정 가능) | | |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신청서를 본 대학교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 |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및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협약서를 우편으로 교환하거나 체결식 개최 여부 협의 가능 | | | | | | |  | |  |  |  |  | ▼ |  |  |  |  | |  | 1,2학기 산업체위탁 신·편입학 모집 안내 공문 발송 시 공람 또는 게시  임직원이 산업체위탁전형 입학 시 장학혜택 부여 | | | | | | |  | |  |
| **협약체결기관 소개** |  |
| **1. 산학협력 체결 기관**   |  |  |  |  | | --- | --- | --- | --- | | EMB000018583830 | EMB000018583831 | EMB000018583832 | EMB00002bbc3000 | | EMB000018583834 | EMB000018583835 | EMB000018583836 | EMB000018583837 | | EMB000018583838 | EMB000018583839 | EMB00001858383a | EMB00001858383b | | **[ 그 외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산학협약 체결 ]** | | | | | EMB00001858383c | EMB00001858383f | EMB00001858383d | EMB00001858383e | | EMB000018583840 | EMB000018583843 | EMB000018583841 | EMB000018583842 | | EMB000018583844 | EMB000018583845 | EMB000018583846 | EMB000018583847 | | **[ 그 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학협약 체결 ]** | | | | | EMB000018583848 | EMB000018583849 | EMB00001858384a | EMB00001858384b | | EMB00001858384c | EMB00001858384d | EMB00001858384e | EMB00001858384f | | EMB000018583850 | EMB000018583851 | EMB000018583852 | EMB000018583853 | | **[ 그 외 많은 공공기관들과 산학협약 체결 ]** | | | | | EMB000018583854 | EMB000018583855 | EMB000018583856 | EMB000018583857 | | EMB000018583858 | EMB000018583859 | EMB00001858385a | EMB00001858385b | | EMB00001858385c | EMB00001858385d | EMB00001858385e | EMB00001858385f | | [ 그 외 많은 산업체와 산학협약 체결 ] | | | | | EMB00002bbc2ffd | EMB00002bbc2ffa | EMB000018583860 | EMB000018583861 | | **[ 그 외 여러 부대들과 업무협약 체결 진행 중 ]** | | | | | **산학협력 근거 및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 | | | | **7. 산학협력 체결 근거**   |  | | --- | |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8.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 서울 | 서울특별시청(소방재난본부 포함), 강동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 종로구청 | | 경기 | 경기도청(재난안전본부 포함), 고양시청, 군포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수원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여주시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왕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하남시청 | | 인천 | 계양구청, 남구청, 남동구청, 동구청, 부평구청 | | 강원 | 강원도청(소방본부 포함), 양구군청, 정선군청, 춘천시청 | | 충북 | 충북도청(소방본부 포함), 제천시청, 충주시청 | | 충남 | 당진시청, 청양군청 | | 대구 | 대구광역시청(소방안전본부 포함), 남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동구청, 북구청,  서구청, 수성구청, 중구청 | | 경북 | 경산시청, 울진군청 | | 부산 | 부산광역시청(소방안전본부 포함), 동래구청, 사하구청, 수영구청, 중구청, 영도구청 | | 경남 | 김해시청, 남해군청, 창원시청, 통영시청 | | 전북 | 전주시청, 군산시청, 김제시청, 남원시청, 무주군청, 부안군청, 순창군청, 임실군청,  장수군청, 진안군청 | | 광주 | 서구청 | | 전남 | 나주시청, 목포시청, 해남군청 | | | | | |  |

|  |
| --- |
| **24개 학과 개설, 교과목 수 1위** |
| **8. 학과 개설**  **- 2개 계열, 6개 분야, 24개 학과 개설**   |  |  | | --- | --- | |  | **24개 학과** | | 인문사회  계열 | [경상분야] 경영, 세무회계, 무역물류, 금융소비자, 부동산  [법무분야] 법무행정, 경찰  [국제분야] 영어, 중국, 일본  [휴먼서비스분야] 상담심리, 사회복지, 아동, 평생교육 | | IT 및 문화  예술계열 | [공학분야]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융합  [예술분야] 미디어영상, 시각디자인, 생활환경디자인, 패션, 회화,  문예창작, 문화예술경영, 실용음악 |   **9. 자격증**   |  | | --- |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보건교육사 등의 **국가자격증** | | 다양한 총장명의 민간자격증 |   EMB00002bbc302b |
| **산학협력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관현황** | | | | | | | | | | |
| 산 학 협 력  기 관 명 | |  | | | | | 대 표 자  (직함 및 성명) | |  | |
| 설 립 일 자 | |  | | | | | 홈페이지주소 | |  | |
| 근 로 자 수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전 화 | |  | | | | | FAX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사 업 부 문 | |  | | | | | | | | |
| 소 개 | |  | | | | | | | | |
| 연 혁 | | 년 월 일 | | 주요내용(대표자 또는 상호, 경영 주요사항 변경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관 산학협력업무 담당자 | | | | | | | | | | |
| 부서 | 직위 | | 성명 | | 연락처 | 휴대폰 | | FAX |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 및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인)

|  |  |
| --- | --- |
| EMB00002bbc3033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귀하** |

❉ 산학협력 신청 구비서류 : 산학협력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FAX 또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가능)

❉ 문의 : 서울디지털대학교 대외협력처 입학관리팀

❉ 메일 : exco@sdu.ac.kr | Tel : 02-2128-3011~3014 | Fax : 02-2128-3017

❉ 팩스 전송 후 도착여부 확인전화 요망

**산 학 협 력 협 약 서**

○○기관과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상호 발전을 위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연구와 현장실무경험 공유 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온라인교육 기반을 활용하여 “○○기관”소속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기술을 대학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우수 인재의 양성과 실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① “○○기관”과 “대학교”는 ‘산학협력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② “○○기관”과 “대학교”는 별도의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른 맞춤교육과정을 온라인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개설하고, “○○기관”소속 임직원 중 자격 있는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기관”과 “대학교”는 각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각종 발간자료 등을 상호 교환한다.

④ 협약서에 없는 내용은 상호 간 별도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4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타) 본 협약서는 “○○기관”과 “대학교”가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협약체결 이전의 어떤 계약이나 양해, 약속, 표시를 대신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기관장 ○ ○ ○** |  | EMB00002bbc3038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 장 정 오 영** |
|  |  |  |  |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기관과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교육의 과정)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학위과정은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을 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원에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생의 자격) 위탁생은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입학 당시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으로서 “대학교”의 신(편)입학 자격기준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② 위탁생은 “○○기관”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학교”의 총장이 정한다.

③ 위탁교육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기관”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6조(산업체의 시설이용)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기관” 소속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하여 “대학교” 겸임교수 또는 비전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및 등록) ① 위탁생의 교육비는 “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수준으로 하되,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기관” 소속 임직원인 위탁생은 입학금 전액과 매학기 수업료의 ○○%를 감면하되, 입학 후 매학기 소정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교”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대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대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제11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본 약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4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016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기관장 ○ ○ ○** |  | EMB00002bbc3038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 장 정 오 영** |
|  |  |  |  |  |